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20일, 이수진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2.19.)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교육·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을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

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할 책무(제4조)를 지며, 실태조사(제5조의2) 및 기본계획(제6조)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구의 경제상태 및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영양의 수준 및 운동 등 경험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바, 가구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아동이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수준도 낮고, 의료 수요가 있으나 충족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의 경우도,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거나, 도시(동)보다 시골(읍면)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의료를 아동빈곤정책의 범위로 명확히 하는 경우 보건의료 분야 아동빈곤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아동의 건강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따라 불평등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빈곤아동정책 범위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되, 순서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으로 순서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빈곤아동정책 범위에 추가되는 ‘보건의료’를 ‘복지’ 다음으로 순서를 조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목적, 빈곤아동의 정의,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 빈곤아동정책 범위를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 등’에서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으로 순서를 수정함(안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 2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u>복지·교육·문화</u>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u> ----- ----- ----- ----- ----- ----- ----- -----.	제1조(목적) ----- ----- <u>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u> ----- ----- ----- ----- -----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	제3조(정의)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u>복지·교육·문화</u>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3. ----- ----- ----- <u>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u> ----- ----- -----	3. ----- ----- ----- <u>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u> ----- ----- -----

말하며, 그 구체 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 ----- -----.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u>복지·교육</u> <u>·문화</u>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 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① ----- ---- <u>보건의료·복</u> <u>지·교육·문화</u> --- ----- ----- ----- ----- ----- -----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① ----- ---- <u>복지·보건의</u> <u>료·교육·문화</u> --- ----- ----- ----- ----- ----- ----- ----- ----- -----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②·③(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빈곤아동의 <u>복</u> <u>지·교육·문화</u> 등 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5년마다 실시	제5조의2(실태조사) ① ----- ----- <u>보건</u> <u>의료·복지·교육</u> <u>·문화</u> ----- ----- -----	제5조의2(실태조사) ① ----- ----- <u>복</u> <u>지·보건의료·교육</u> <u>·문화</u> ----- ----- -----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u>복지·교육·문화</u>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u>복지·교육·문화</u>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 4. (생략) ② (생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u>----- ----- ----- ----- ----- ----- ----- ----- ----- ----- ----- ----- ----- ----- -----. 1. -----<u>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u>-----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u>----- ----- ----- ----- ----- ----- ----- ----- ----- ----- ----- ----- ----- ----- -----. 1. -----<u>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u>----- -----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복지·교육·문화”를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교육·문화”를 각각 “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u>복지 · 교육 · 문화</u>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복지 · 보건의료·교육 · 문화</u> --- ----- -----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u>복지 · 교육 · 문화</u>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 ----- <u>복지 · 보건의료·교육 · 문화</u> -----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복지 · 교육 · 문화</u>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u>복지 · 보건의료·교육 · 문화</u> ----- -----

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 4. (생략)

②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태조사) ① -----
-----복지·보건
의료·교육·문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복
지·보건의료·교육·문화-----

-----.

1. -----복지·보건의료·
교육·문화-----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